

약관 및 설명서 변경 공시

1. 투자신탁의 명칭

봉주르 유럽배당 주식투자신탁 제 1 호

2. 신탁약관 변경 시행일: 2007. 2. 15

3. 약관 및 설명서 변경 주요내용

- 변경 사유: 봉주르 유럽배당 주식투자신탁 제 2 호 출시와 맞춰 기준가격적용일등을 변경함.

변경사항	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	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
제3조(정의)	<p><생략></p> <p>1. <생략></p> <p>2. “영업일”이라 함은 <u>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개장일</u>을 말한다.</p> <p>3. <생략></p>	<p><현행과 같음></p> <p>1. <현행과 같음></p> <p>2. “영업일”이라 함은 <u>판매회사의 영업일</u>을 말한다.</p> <p>3. <생략></p>
제8조(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좌수)	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금() 원으로 하고,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의 총좌수는 <u>1조좌</u> 로 한다.	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금() 원으로 하고,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의 총좌수는 <u>10조좌</u> 로 한다.
제20조(수익증권의 판매가격)	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하며,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 3 조제 2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<u>판매회사의 영업일</u> 로 한다. 다만,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	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 다만,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
제22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	<p>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(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1 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부터 <u>제 6 영업일</u>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 다만, 환매청구일이 <u>한국증권거래소의 개장일</u>이 아닌 경우(토요일은 제외한다)에는 제 3 조제 2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.</p> <p>②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는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6영업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</p> <p>③~④ <생략></p>	<p>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(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1 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부터 <u>제 4 영업일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)</u>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</p> <p>②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는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6영업일(<u>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7영업일</u>)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</p> <p>③~④ <현행과 같음></p>
제25조(수익증권의 환매)	<생략>	<현행과 같음>

<p>제한)</p>	<p>1.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<u>4 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</u></p> <p>2. <생략></p>	<p>1.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<u>4 영업일(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5 영업일)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</u></p> <p>2. <현행과 같음></p>
<p>부 칙4 (변 경)</p>	<p><신 설></p>	<p>제 1 조(시행일) 이 약관의 정한 사항은 2007년 2월 15일부터 시행·적용 한다.</p> <p>제 2 조(수익증권 환매가격등의 예외) 제 22 조 제 1 항 및 제 2 항 규정의 개정으로 2005년 6월 7일 개정된 부 칙 2(변 경)의 제 3 조는 삭제한다.</p>